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건강검진종합계획 작성 시 성·연령별 특성 반영 》

■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905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2
-----------------	---

I. 개요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남인순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5. 12. 4.

(다) 회 부 일 : 2025. 12. 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성의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은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로 나타나고 있고, 여성의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은 호르몬 변화와 생리, 임신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여성과 남성에게서 나타나는 질환이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에 건강검진종합계획 작성 시 성·연령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여 건강검진이 그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후단 신설).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검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성·연령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건강검진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검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1조(건강검진종합계획) ① ----- ----- ----- ----- ----- . 이 경우 성·연령별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2. 주요 검토 사항

- 현행법은 국가의 책무로 “성·연령별 건강위험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도록” 하고 있고(제5조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건강검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1조).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생략)

② 국가는 성·연령별 건강위험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1조(건강검진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검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건강검진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건강검진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국가건강검진의 시행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방안
4. 그 밖에 건강검진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제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016~2020) 및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021~2025)에서는 성·연령별 목표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프로그램 개선’이 핵심과제에 포함되어 추진된바 있고, 2026년 상반기 내 수립될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026~2030)에도 ‘생애주기별(성·연령) 건강검진 강화’가 포함될 계획임.

< 제2차·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중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내용 >

① 제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성과

■ 근거 기반의 생애주기별 검진체계 구축

- 근거 기반의 생애주기별 검진프로그램 개선

- 수검자 건강특성에 맞는 성, 연령별 목표질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주기 적정조정

< 주요 검진항목 주기 조정사항 >

구 분	성연령별 검진항목	조정 전(前)		조정 후(後)
일반 검진	골다공증('18)	66세(여성)	⇒	54-66세(여성)
	인지기능장애('18)	66세(1회)	⇒	66세 이상(2년/1회)
	우울증('19)	40·50·60·70세(10년/1회)	⇒	20·30·40·50·60·70세(10년/1회)
암검진	간암('16)	고위험군(1회/1년)	⇒	고위험군(6개월/연2회)
	자궁경부암('16)	만30세 이상 여성(2년/1회)	⇒	만 20세 이상 여성(2년/1회)
	폐암('19)	-	⇒	만54~74세 30갑년 흡연력 고위험군(2년/1회)

②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핵심과제

- ▶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 개편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고위험군 대상 폐기능검사 및 안저검사 도입 추진 등)
- ▶ 건강검진 마이데이터 등 개인건강기록 관리·지원 고도화
- ▶ 건강검진 근거 타당성 평가 및 검진기관 질 관리 강화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은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시 성·연령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들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건강검진종합계획을 수립하라는 취지로 이해됨.
- 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 및 정책 실행 과정에서 성별 특성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이른바 ‘여성건강 4법안’으로 동 법안을 포함하여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4909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4906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4904호)이 발의된 점을 고려하면,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에서도 성별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다만, 현행법 제5조제2항에서 성·연령별 건강위험을 고려하여 국가검진을 계획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건강검진 항목 또한 성·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다는 점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 |
|--|
| * 이상지질혈증 :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 주기
* B형 간염 : 40세, * C형 간염 : 56세
* 골밀도 검사 : 54, 60, 66세 중 여성, *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
* 생활습관평가 : 40, 50, 60, 70세, * 조기정신증 : 20~34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 70, 80세, * 구강검진 치면세균막 검사 : 40세 |
|--|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시 성·연령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현행법 제5조제2항에 “국가는 성·연령별 건강위험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전부터 현재까지 수립하였거나 수립 예정인 종합계획에서도 ‘성·연령별 특성 반영한 건강검진’ 관련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만 검진항목 도입 여부는 ① 중요한 건강문제, ② 조기발견 및 치료 가능성, ③ 검진방법 수용성, ④ 검진으로 인한 이득, ⑤ 비용 대비 효과 등 국가건강검진의 원칙 및 건강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위원회¹⁾에서 심의·결정할 사항이라는

1) 제8조(국가건강검진위원회) 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건강검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산하에 건강검진 지침 개발, 평가 및 질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가건강검진의 대상자 범위·검사항목·검진주기 및 방법의 개발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검진기관 인력·시설 및 장비 등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
4. 국가건강검진의 질 관리 및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국가건강검진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6.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입장²⁾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또한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며, 다만 기존 법 조항에 성·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도록 하고 있고 성·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핵심과제가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501

7. 국가건강검진에 필요한 인력, 조직, 예산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관련 학회 등에서 국내·외 임상, 역학자료 등을 제출하면 의과학적·경제적 타당성 및 검진원칙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전문가(질병청, 검진기준 및 질관리반) 검토 후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상정·심의를 거침.